

1. 개정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005호, 2016. 2. 3. 개정, 2016. 8. 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(안 제4조)

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, 조사대상 선정,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3. 30. ~ 5. 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”을 “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
2.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 세부기준 적합 여부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는 조사대상의 선정, 조사기간 설정 및 조사표 개발,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,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) ① <u>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 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	제4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) ① <u>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</u> 2. <u>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 세부기준 적합 여부</u> 3. <u>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는 조사대상의 선정, 조사기간 설정 및 조사표 개발,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,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